

의안번호	제3096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6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출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오기 정비(안 제3조제7호,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35조)
- 나. 공연장 사용료 납입의 방법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다. 사용자 판매수익 일부에 대한 사용료 추가징수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 라. 공연장 사용취소 시 부담금 완화(안 제12조제1항제4호)
- 마.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제31조)
- 바. 생활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장 기준 신설(안 제32조제8호)
- 사. 사용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 추가(안 별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3) 「민법」
- 4)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3927(2026. 3. 27.)호]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628호
  - 가) 예고기간: 2026. 3. 20.~2026. 4. 9.(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을“(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면제한다”를 “전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를 “공연장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20”을 “10”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사용자의 변상책임)”을“(사용자의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의2의 제목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또는 감면”을 “감면”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에 대하여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 신장 140cm 이하인 자  
(단, 보호자(인솔교사 포함)책임 하에 입장 가능)

제3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또는 기본이용료를 말한다.</p> <p>8. ~ 12. (생략)</p> <p>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생략)</p> <p>② <u>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의 납입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u></p> <p>③ <u>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2항의 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p> <p>① <u>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u></p>	<p>제3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8. ~ 12.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u></p> <p>③ <u>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p> <p><u>&lt;삭 제&gt;</u></p>

물(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등 유  
사공연물을 포함한다)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입  
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기본사용  
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  
2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  
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전부 면제한다.

④ -----  
-----  
-----  
공연장시설사용료-----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  
반환

5. (생략)

② (생략)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또  
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  
다.

제15조(보증금)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흥행성있는 오락성 관람물  
(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  
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  
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  
만, 보증금은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또

-----  
----- 10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납입은 사용료 납입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치된 보증금은 공연장 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

제17조(입장권의 발행·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이 경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 공연장 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정산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삭 제>

입장시 회수는 문화체육센터가 담당한다.

④ 사용자가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21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31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제21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이용료의 감면) -----

-----  
-----  
-----  
---- 감면-----.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  
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다.

제3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입장의 제한)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체육시설에 대하여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 신장 140cm  
이하인 자(단, 보호자(인솔교  
사 포함)책임 하에 입장 가능)

<삭제>

【별지 제1호서식】 <현행>

문화체육센터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

신	직업 또는 단체명	연락처	사무실		
			자택		
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재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타				
사용기간	20 . . . . ~ 20 . . . . ( 일간)	사용횟수	오전	회	총 일 회
			오후	회	
			야간	회	
공연행사명					
행사목적					
참석예정인원	명 (출연자 : 명, 일반 : 명)				
입장료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기타 참고사항				
<p>「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소재지) 성 명 인</p> <p>고 성 군 수 귀하</p>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직업 또는 단체명			연락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재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 타						
사용기간		. . . . ~ . . . . ( 일간)	사용횟수	오 전 오 후 야 간	회 회 회	총 일 회	
공연행사명							
행사목적							
참석 예정 인원		명 (출연자 : 명, 일반 : 명)					
입 장 료							
첨 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팸플렛, 입장권 견본 등) 3. 공연신고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4. 기타 참고사항					
고성군은 문화체육센터공연장 사용허가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b>○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b>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		성명(단체명), 연락처		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소재지): 성 명: (서명 또는 인)							
<b>고 성 군 수</b> 귀하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공연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직업 또는 단체명		연락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소(소재지)										
공연행사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대시설										
	기타										
<p>고성군은 문화체육센터공연장 사용변경허가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집목적</th> <th>수집항목</th> <th>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td> <td>성명(단체명), 연락처</td> <td>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소재지):                  성 명: (서명 또는 인)</p> <p>고 성 군 수 귀하</p>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	성명(단체명), 연락처	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	성명(단체명), 연락처	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									

[별지 제7호서식] <현행>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일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농협
		년 월 일
징 수 관 :		
성 명 :		
(납부자)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일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농협		인	
징수관 귀하			
납 입 자			
징 수 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 장	인
(납부자)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		
일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농협		인
(납부자)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0000. 00. 0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0000. 00. 00.>

[별지 제11호서식] <현행>

#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 인 년월일	행 사 명	입장권의 종류	매 수	검인자 성 명	확인자 성 명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0000. 00. 00.>

[별지 제12호서식] <현행>

## 입장수입정산내역서

사 용 자	직업 또는 단 체 명		연락처	사무실 자 택																
	성명 또는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소(소재지)																			
공 연 행 사 명																				
행 사 기 간		20 . . . . . ( 일간 회)																		
입장권 판매 및 검인내역																				
입장권  구 분	검 인		판매수		잔 매	정산내역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기금 및세금	센터 사용료	입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p style="text-align: center;">「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장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30%;">작성자</td> <td style="width: 30%;">직급</td> <td style="width: 30%;">성명</td> <td style="width: 10%;">(인)</td> </tr> <tr> <td>입회자</td> <td>주소</td> <td>성명</td> <td>(인)</td> </tr> <tr> <td>확인자</td> <td>직급</td> <td>성명</td> <td>(인)</td> </tr> </table>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0000. 00. 00.>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0000. 00. 00.>





<b>회원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b>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종목	수영, 스쿼시			회원번호		
이용기한(당초)	년 월 일	이용기한(변경)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장사유						
<p>위와 같은 사유로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 제5호에 따라 (수영, 스쿼시)회원 이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과의 관계 :</p>						
<b>고 성 군 수 귀 하</b>						
첨 부 : 회원증 1부						

회원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가입종목	수영, 스쿼시		회원번호								
이용기한(당초)	년 월 일	이용기한(변경)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장사유											
<p>고성군은 회원 이용기간 연장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수집목적</th> <th style="width: 33%;">수집항목</th> <th style="width: 33%;">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td> <td>성명(단체명), 연락처</td> <td>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	성명(단체명), 연락처	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현황 파악 및 관리	성명(단체명), 연락처	본 서비스 종료 시 보유정보 폐기									
<p>위와 같은 사유로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제5호에 따라 (수영, 스쿼시) 회원 이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고 성 군 수 귀 하											
첨 부: 회원증 1부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스포스산업과장 전 인 관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 생략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